

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[별표 2] <개정 2024. 12. 23.>
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의 범위(제13조제1항 관련)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

전용면적의 합계	인증 수수료 금액
12만제곱미터 미만	1천1백90만원 이하
12만제곱미터 이상	1천3백20만원 이하
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라목 및 제3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

전용면적의 합계	인증 수수료 금액
6만제곱미터 미만	1천7백80만원 이하
6만제곱미터 이상	1천9백80만원 이하

비고: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.